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24
----------	-------

발의연월일 : 2026. 5. 12.

발 의 자 : 박성민 · 박준태 · 김형동
엄태영 · 고동진 · 이양수
김상훈 · 이인선 · 구자근
정동만 · 신성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보호대상자녀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공유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큼.

이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11(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확인 및 통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보호대상자녀에 대하여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해당 보호대상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의 존재 여부, 그에 대한 연락 가능 여부 및 그에 의한 보호대상자녀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피의자에게 보호대상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는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보호대상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

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내용은 보호대상자녀의 성명·연령·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혐의내용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로 본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의자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거나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45조의11(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확인 및 통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보호대상자녀에 대하여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해당 보호대상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의 존재 여부, 그에 대한 연락 가능 여부 및 그에 의한 보호대상자녀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피의자에게 보호대상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는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u></p>

청구 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
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보호대상자녀의 실
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
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내용은 보호대상자녀의 성명·
연령·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
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필
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
정하여야 하며, 혐의내용 등 보
호대상자녀의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로 본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